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2001.4.1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문의 용어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함
(안 제5조)

나. “3년”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5년이내”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나. 기 타 :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6조제4항 본문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u>1. 생활보호대상자</u> 2~3 (생략)</p>	<p>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u>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 2~3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탁운영) ①~③(생략)</p> <p>4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p>	<p>제6조(위탁운영)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 <u>5년 이내로</u> ----- -----</p>